##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99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 : 윤두현 · 김기현 • 권명호

윤창현 · 김희국 · 류성걸

김희곤 • 윤주경 • 이철규

강민국・최승재・이 용

양금희 · 강대식 · 박형수

구자근 • 이종성 • 김상훈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시각장애 등 각종 장애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의 유형 중에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하 "중복장애"라 함)가 없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중복장애를 신설하고,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8 조).

#### 법률 제 호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복장애(두 가지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는 장애유형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	
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	
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다.	<b>.</b>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1. 중복장애(두 가지 종류 이
	<u>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u>
	태를 말한다)
<u>11.</u> (생 략)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②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	
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	
공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특수
	교육대상자에게는 장애 유형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